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5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안상훈 · 김성원 · 주호영
안철수 · 고동진 · 박덕흠
한지아 · 신동욱 · 김용태
임이자 · 김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제5항 또는 제6항은 육아휴직 복귀자 또는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까지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에 최초로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제72조제2항 중 “제29조의8제4항·제5항”을 “제29조의8제4항·제5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에 해당하였던 자(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것

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u>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u> <u>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u> <u>“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라 한</u> <u>다)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u> <u>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u> <u>세연도까지의 기간까지 육아시</u> <u>간 사용 근로자 인원에 700만</u> <u>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u> <u>원)을 곱한 금액을 육아시간</u> <u>사용 근로자에 최초로 해당하</u> <u>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u> <u>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u> <u>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u> <u>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u> <u>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u> <u>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u> <u>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u> <u>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u> <u>하지 아니한다.</u> <u>1. 해당 기업에서 1년 6개월 이</u>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생략)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⑦ 제5항 또는 제6항은 육아휴직 복귀자 또는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

제29조의8제4항 · 제5항 · 제6항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